

규약 변경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
공시합니다.

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대출채권)
2	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대출채권)
3	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변경 내용

아래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효력 발생일

2020년 05월 19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

(변경대비표)

-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(대출채권)

정정사유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(2020.04.) 반영

정정사항 :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<u>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,③ (생략)</p> <p>④ <신 설></p> <p>⑤ <신 설></p>	<p>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②,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따른 보상에 따른다.</u></p> <p>⑤ <u>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른다.</u></p>

(변경대비표)

-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대출채권)

정정사유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(2020.04.) 반영

정정사항 :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<u>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,③ (생략)</p> <p>④ <신 설></p>	<p>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②,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보상 금액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</u></p> <p><u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남은</u></p>

	<p>⑤ <신 설></p>	<p><u>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3. 지급방법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</u></p> <p><u>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(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(변경대비표)

-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정정사유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(19.9.16.)에 따른 정정사항 및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(2020.04.) 반영

정정사항 :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-	-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,③ (생략)</p> <p>④ <신 설>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②,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</p>

	<p>⑤ <신 설></p>	<p><u>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</u> <u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</u> <u>3. 지급방법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</u></p> <p><u>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(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	---